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5 선고 2021가단1080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윤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 D, E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5. 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49,381,3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49,381,3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는 2015. 9. 16. F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2258호로 “128,694,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H는 G 주식회사로부터, 원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2020. 10. 23. 무렵 F에게 이러한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I(C, D, E, F의 모친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들인 C, D, E, F는 그 무렵 망인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F를 제외하고 C, D, E이 각 1/3 지분씩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C, D, E은 2021. 2.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5. 1.자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 D, E은 2021. 2.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F의 아들이자 C, D, E의 조카이다)에게 2021. 2. 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F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등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또한,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주택 중 1/4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C, D, E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F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가 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F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F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한다. 따라서 F에게 아무런 상속분이 없는 이상, F가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주택 중 1/4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C, D, E은 B의 망인에 대한 부양 공로를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일 뿐이므로 사해 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F의 법정상속분액보다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액이 더 크므로 F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다고 보인다.

가) 망인의 자녀들인 F와 C, D, E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다. 또한,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택은 그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200,954,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생전에 F로 하여금 망인 명의로 개설한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한도가 -4,000만원인 마이너스 통장이다)의 돈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금액을 수시로 변제하여 주어 F에게 합계

193,321,710원(= 아래 191,692,445원 + 아래 1,629,265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는 위 금액 상당의 돈을 특별수익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3. 11. 29. 개업한 J를 2015. 1. 20. 폐업하는 등 사업에 실패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던 F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계좌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F 또는 F의 전처 K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위 계좌를 주로 사용하였다.

② F는 2013. 8. 17.까지 위 계좌에서 -39,836,544원의 돈을 사용하였다.③ 망인은 2013. 8. 20.에 39,931,565원을 입금하여 위 돈을 변제하였다.

④ 망인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39,931,565원을 포함하여 2019. 4. 26.까지 합계 191,692,445원의 돈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F가 위 계좌에서 사용한 돈을 수시로 변제하였다.

⑤ 망인의 사망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1,629,265원인데 이 또한 망인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으로 변제되었다.

다) F의 구체적 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①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200,954,200원 + F 특별수익 193,321,710원 = 394,275,910원

② F의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 98,568,977원(= 위 394,275,910원 × 상속지분 1/4, 원 미만은 버림) - F의 특별수익 193,321,710원 = - 94,752,733원

③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F의 법정상속분액 98,568,977원보다 F의 특별수익액 193,321,710원이 더 크므로 F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다.

3) 소결론

결국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F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F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F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F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별 지 목 록

[토지]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 88㎡
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 97㎡

[건물]

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83.76㎡

2층 61.29㎡

